

즉결심판 출석통지서(최고서)

보내는 사람 □□□-□□□□

경찰서장,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주소

(담당 , ☎) 받는 사람

귀하

□□□-□□□□

즉결심판 출석통지서(최고서)

발행번호:

경범죄법치 금미납자		주민등록번호	-
즉결심판 예정일	년 월 일	즉결심판소	
법치금등 납부기한	년 월 일	법치금등	원
위 반 사 항	위반일시		
	위반장소		
	위반내용		
	법치금	원	법치금통고서번호

☐ 귀하께서는 경범죄법치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.

☐ 귀하께서 원할 경우 「경범죄 처벌법」 제9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통고받은 법치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위 법치금등(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 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, 「경범죄 처벌법」 제3조 제2항 관련 행위는 최대 20만원)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
☐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·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한 날짜로 즉결심판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☐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이 통지서가 갈 수 있으니 법치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법치금 영수증을 FAX (000-000-0000)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경찰서장
해양경찰서장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법치금등 영수증(납부자용)

법치금통고서번호	-3-
일반회계	☐ 경찰청 소관 ☐ 해양경찰청 소관
세입징수관서	
계좌번호	
납부금액	
납부기한	
납부자	
생년월일	

위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은행(우체국) 지점

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

※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.

법치금등 납부고지서(은행보관용)

법치금통고서번호	-3-	일반회계	☐ 경찰청 소관 ☐ 해양경찰청 소관
계좌번호		세입징수관서	
납부금액		납부기한	
납부자		생년월일	

위 금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은행(우체국) 지점

수납인

경찰서장
해양경찰서장 [인]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(주) 음영부분은 엷은 파란색으로 하고,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붉은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한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